

상상플랫폼 임대차 계약서

행 사 명		사업자번호	
주 최 자		전화번호	
담 당 자			

1. 임대내역

1) 임대내역

장 소	일 자	일 수	일임대료(a)	감면임대료(b)	일관리비(c)	합계(a*(1-b)+c)
다목적홀 (1,598㎡) 및 웨이브테크 (676㎡)	~					
(㎡)	~					

* 전기료 정산 및 연체료

- 전기 사용료는 대관기간 중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용량 측정은 원칙적으로 계량기 검침량에 따른다. 다만,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전기료는 행사 종료 후 익월 초 월 단위로 합산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며, 임차인은 정해진 기일 내 납부해야 한다.
- 임차인이 전기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전기료에 대하여 임대료 지체상금과 동일한 비율의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총계약금액

구 분	임대료(a)	시간외사용료(b)	부가세(c)	합계(a+b+c)
금 액(원)				

2. 납입내역

구 분	내역별 금액	부가세	납입금액	납입기한	납입계좌
계 약 금	임대료의 20%				우리은행 1005-108-32573 (예금주 : 인천관광공사)
잔 금	임대료의 80%				
합 계					

3. 약관

제1조(사용시간)

1. 1일 다목적홀 기본 사용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2. 기본 사용시간 초과 사용시 초과시간당 1일 임대료의 20%를 시간의 사용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은 30분을 기준으로 반올림한다.

제2조(계약조건)

1. 주최자는 납입내역에 따라 임대료, 임대료부가세 등을 납입한다.
2. 제1항의 제금액은 무이자로 한다
3. 주최자가 임대료 납부 지연 시, 지체한 날로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12~15%의 비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3조(취소·변경 및 위약금)

1. 주최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된 장소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하는 위약금을 공사에 지불해야 한다. 다만, 이미 납입된 임대료가 있을 시에는 위약금을 차감한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표의 위약금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된다.

연번	구분	위약금
1	[취소]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 시작일 기준 4일 전 취소 시	임대료의 40%
2	[취소] 사용 시작일 기준 3일 전부터 당일 취소 시	임대료의 100%
3	[변경] 사용 시작일 기준 3일 전 변경 요청 시	임대료의 100%

3. 주최자는 위약금 납입 즉시 공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취소 또는 변경 시점은 주최자의 요청 공문이 공사에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해지 및 위약금)

1. 공사는 주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임대차계약 또는 상상플랫폼 대관 운영내규를 위반한 경우
 - 2) 임대료를 사용 개시일까지 납입하지 않고 지연된 경우
 - 3)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하는 등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4) 상상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미지를 저해할 만한 분쟁 상황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주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위약금 납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취소시기	위약금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용개시전 91일까지	임대료의 20%
사용개시전 90일부터 8일까지	임대료의 50%
사용개시전 7일부터 전일까지	임대료의 80%

3. 이미 납입된 임대료가 있을 경우 위약금에서 차감하며 위약금은 이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4. 사용개시 후 주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를 위약금으로 적용하며 주최자는 잔여기간분에 대한 임대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사용개시 후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잔여기간분에 대한 임대료를 정산하여 반환한다.
5. 해지시기는 상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자 또는 주최자의 해지 요청 공문이 공사에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6. 천재지변, 재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1항의 각호가 발생한 경우와 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5조(용어해석)

1. 본 운영내규 및 본 운영내규에 의해 체결된 계약서 내용 중 용어 해석의 의미가 있을 시는 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운영내규에 명시된 사항 외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의 결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분쟁)

- 본 계약에 관하여 상상플랫폼 대관 및 사용 관련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으로 한다.

제7조(특약사항)

- 상기의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임 대 인
상 호 명 : 인천관광공사
주 소 :
대 표 자 : (인)

임 차 인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